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현장

안미리*, 김성남**, 황윤자*, 부향숙***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나사렛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e-mail:mlahn@hanyang.ac.kr

An investigation to E-Learning accessibility

Mi-Lee Ahn*, Sung-Nam Kim**, Yun-Ja Hwang*, Hyang-Suk Boo***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Han-Yang University, Nazareth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요 약

이러닝 학습은 다양한 목적을 지닌 많은 대상들에게 눈부실만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의 특성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그동안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도 소외된 대상들을 고려한 접근성 관련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자성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 기업 CEO의 인식을 조사하여 웹 접근성과 관련한 제도적인 여건 속에서도 학습 환경에서는 여전히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위의 목적을 위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운영자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수 설계을 위한 이러닝의 접근성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러닝 접근성에 대한 CEO의 인식은 매우 저조하며,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편적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닝 기업 CEO의 낮은 인식은 곧 개발자와 교수설계자들에게 접근성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현재 제공되는 이러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학습설계와 접근성에 대한 교육과 확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1. 서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정보격차 해결방법으로 그리고 2006년 UN 헌장의 권고 사항에서 제시되었듯이 온라인 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것(Access for all)'으로 축약되면서 웹 접근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제기된 2007년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과 2008년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 Systems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교육은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개개인의 자유와 자기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혜택이다. 또한 한국에서 2007년 공포되어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가장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부류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사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기 시작하였다. 제도적 후원 속에서 장애인, 노인 등도 비장애인, 젊은이와 동등하게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많은 기업의 CEO, 운영자 및 개발자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이러닝 접근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가. 이러닝(e-Learning)과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 적합한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콘텐츠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정책 당국과 학계 및 산업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그간 이루어졌던 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속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정보소외계층"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보기기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큰 의미가 있다[1].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 방법의 기본적인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용상의 적정성, 또는 능력, 기술, 필요, 기호, 사용 환경,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보편화된 요구로 정의된다[2]. 인터넷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웹접근성은 Web을 이용한 정보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보편적 서비스 또는 디자인의 실현요소 준 접근이 강조된 요구사항이다[7].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

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따라서 이러닝 접근성은 웹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의 형태로 이미 다양한 목적과 계층의 대상자를 위해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과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하는 보편적 학습의 기회에 대한 접근을 말하고 있다[1][3].

나.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관련 지침 및 표준 동향

웹 접근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지침은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WCAG)을 들 수 있다. WCAG는 1999년 5월 1.0이 발표되고 이어서 지난 2008년 12월에 2.0이 발표되었다. WCAG 2.0은 보다 다양한 유형의 웹 테크놀로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WCAG 1.0이 우선순위 1-3까지의 총 67개의 체크포인트를 포함한 총 14개의 지침(guideline)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 WCAG 2.0은 수준(level) A, AA, AAA의 성공기준(success criteria)을 가지고 있는 총 13개의 지침과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기술적 진보성(Robust)의 4개의 원리(principle)로 구성되어 있다[4][5]. 한국의 경우 WCAG 1.0과 미국 Section 508을 참고하여 2004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1.0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인터넷 웹 접근성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1][6].

3. 설문지 및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총 4명의 CEO급 이사 혹은 대표이사와 준비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인식조사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약 60분-90분 인터뷰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대기업・중소기업의 CEO 의견을 조사하였다[7].

4. 인터뷰 결과

CEO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이와 관련한 법이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러닝 교육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사회적 상황과 기업 내 위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닝 접근성 관련 표준・지침에 대해서도 CEO 1명을 제외한 나머지 CEO들은 '모른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교육과 지식은 이러닝 콘텐츠 설계자와 개발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교육되어지고 그들의 의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언급하였다. CEO들이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제고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비용', '적은 사용자층으로 인한 낮은 투자효과', '이러닝 접근성 관련 지식/기술/경험 부족'순이었다. 이는 이러한 결과로 볼 때 CEO들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 가장 민감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5. 결론

이러닝 시장의 성장에는 '참여・개방・공유'라는 개념이 깃든 web 2.0의 출현이 한몫하고 있다. 즉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닝 콘테츠를 개발하고 이러닝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운영자 혹은 CEO들의 웹 접근성 인식을 볼 때,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기는 많이 부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이러닝 접근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와 관련기관은 웹 접근성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함께 실제 개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이러닝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접근성 실태조사 수준의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 비용에 대한 지원, 더욱 강력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며, 이러닝 접근성을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지침 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7].

이러닝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늦게나마 시작한 이러닝 질관리도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접근성은 질관리 이전에 확보되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다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접근성관련 지식공유 방법을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러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안미리, 노석준, 김성남 (2009).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전략. 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정보화진흥원.
[2] 이성일(2006). 국내외 정보접근성 법제도 및 정책동향. 지역정보화·KALI.
[3] 노석준옮김. (2006). 보편적 학습설계. 아카데미프레스
[4] http://www.w3.org/TR/WCAG10/#Guidelines
[5] http://www.w3.org/TR/WCAG20/#Guidelines
[6]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정보통신부. 2005.12.21
[7] 안미리, 노석준, 김성남 (2009).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고서.
[8] 행정안전부 (2008). 웹접근성 현황 및 정책방향. 웹접근성 실태조사 설명회. 2008.09.